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386
----------	------

2025. 12. 04.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1. 10. 광양시장
- 나. 회부 일자: 2025. 11. 10. 회부
- 다. 상정 일자: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2025. 12. 04.) 상정,
“원안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이유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애인 및 일반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광양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 12. 31. 만료 예정으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재계약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광양국민체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재계약)
- 시설·조직·인력·회계 등 운영
- 각종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 관리
- 재활 및 다양한 체육 활동프로그램 운영
- 일반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생활체육활성화 공간 제공

【참고 1.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광양국민체육센터」
- 위치: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695-9
- 규모: 부지 9,285㎡, 건축면적 2,724.32㎡(지하 1층, 지상 1층)
- 주요시설: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매화관(당구장, 탁구장), 해솔관, 론볼경기장, 사무실 등

【참고 2. 위탁사항】

- 위탁방식: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 위탁기간: 2026. 1. ~ 2028. 12. (3년)
- 수탁자선정: 재계약
- 위탁범위: 광양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소요예산: 771,000천원 (3년)

3. 검토 의견

가. 동의안 제출 취지

- 이 동의안은 광양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1) 민간위탁 근거

- 광양국민체육센터의 시설 관리·운영, 사용 허가, 장애인 전문체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체육 종목 육성 및 운동처방 및 상담 등으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며,
-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서 시장은 광양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운영이 가능할 것임.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여부

-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 방식으로 사무 수행 가능성: 광양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체육 전반에 걸친 전문성이 요구되어 관련 지식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장애인 (전문)체육활동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장애인·비장애인 대상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수탁기관인 광양시장장애인체육회는 다년간의 민간위탁 경험으로 광양국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인건비 절감 및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며, 장애인체육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면서도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운동기구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운동기구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단체의 전문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민간위탁금 지출, 체육시설 대관에 따른 수입 등 객관적 성과지표 설정이 가능하며, 운영실적의 분기 단위 보고 및 정산을 통해 위탁 사무의 성과 측정이 용이함.

-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후 제출하며, 민간위탁금 상시 점검 및 분기별 정산 등으로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 종합의견: 「광양국민체육센터」의 건립취지에 부응하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비장애인 대상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안정적 시설운영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고, 장애인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 체육지도자 육성,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 현 수탁자(광양시장장애인체육회)와 재계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위탁 기간의 적절성 여부

-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에서 위탁 기간은 위탁사무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
-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체육시설 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어 부서에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위탁 방법의 투명성·객관성

- 위탁 방법: 민간위탁 재계약
 - ※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재계약)에 시의회의 사전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수 있음.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사무 감사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함.
-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사료됨.

5) 기타 위탁내용 등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 사무원 2, 청소원 1)
- 연도별 지원액: 771,000천원(2026년-249,000 2027년-257,000 2028년-265,000)

다. 종합 의견

- 이 동의안은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또한, 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행정조직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위탁 과정에서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함.
- 광양시국민체육센터 위탁 종료 시점이 2025. 12. 31.임.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3항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향후 민간위탁 동의 시에는 위탁 종료 90일 전에 반드시 동의 받을 것을 주문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원안의결(출석위원 6명)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붙임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광양국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
-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695-9
- 규모: 부지 9,285㎡, 건축면적 2,724.32㎡(지하 1층, 지상1층)
- 주요시설: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매화관(당구장, 탁구장), 해솔관, 론볼경기장, 사무실 등

2. 위탁사항

- 수탁자: 광양시장장애인체육회(회장 광양시장)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범위: 광양국민체육센터 운영 전반
 - 광양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대관등) 관리
 - 시설·조직·인력·회계 등 일반 사무
 - 장애인·비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일반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생활체육활성화 공간 제공
- 소요예산: 771,000천원(3년간)

설명자료

1. 시설현황

- 시설명: 광양국민체육센터
- 위치: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695-9
- 준공일: 2011. 12. 23.
- 규모: 부지 9,285㎡, 건축면적 2,724.32㎡(지상 1층, 지하 1층)
- 주요 시설
 -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매화관(당구장, 탁구장), 해솔관, 론볼경기장, 사무실 등
- 전경 및 위치도



2. 민간위탁 운영 계획

○ 운영 방침

- 사회통합을 이루는 인간존중의 전문 장애인체육관
- 광양시민의 생활체육 수요 해소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

○ 수탁자: 광양시장장애인체육회(회장 광양시장)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연 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민간위탁금	771,000	249,000	257,000	265,000	인건비 및 운영비

○ 위탁금 산출 내역(2026년)

(단위, 천원)

구 분	세부 내역	예 산	비 고
	합 계	249,000	인건비 및 물가상승 고려 민간위탁금 년 3% 인상
인건비	소 계	192,000	
	급여, 수당(초과근무, 휴일수당, 명절상여금)	161,000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31,000	
운영비	소 계	57,000	
	사무관리비	17,000	
	공공운영비	40,000	

○ 운영 시간

구 분	운영 시간	휴 관
평일	09:00 ~ 22:00	첫째주·세째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공휴일	09:00 ~ 18:00	

3.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 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광양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체육 전반에 걸친 전문성이 요구되어 관련 지식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
- 체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 장애인 (전문)체육활동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장애인·비장애인 대상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 ⇒ 광양시장애인체육회는 다년간의 민간위탁 경험으로 광양국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함
-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 ⇒ 직영 시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적 부담과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될 수 있음
 - ⇒ 장애인체육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면서도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에 부합함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운동기구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운동기구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단체의 능력 활용이 요구됨

○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민간위탁금 지출, 체육시설 대관에 따른 수입 등 객관적 성과지표 설정이 가능하며, 운영실적의 분기 단위 보고 및 정산을 통해 분기별 성과 측정이 가능

○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민체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시설 사업의 운영상황에 대한 검사가 제도화됨

⇒ 위·수탁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후 제출하며, 민간위탁금 상시 점검 및 분기별 정산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

⇒ 광양국민체육센터의 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 허가 등의 단순한 행정관리 사무와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운영·장애인 체육선수(지도자)육성·장애인 운동 상담(처방) 등 광양시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특수한 전문사무처리 등 복합적 능력이 요구됨

⇒ 장기적 비전으로 장애인체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계약이 필요함

❖ 최종 검토 결과

- 「광양국민체육센터」의 건립취지에 부응하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비장애인 대상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정적 시설운영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고,
- 장애인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 체육지도자 육성,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 현 수탁자(광양시장장애인체육회)와 재계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앞으로 추진 일정

- 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5. 11.
- 재계약 체결 : 2025. 12.